



사슴 의무도축 대상 제외, 의뢰도축 적용 추진

- 본회,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 반영여부 협의중 -

사슴 의무도축 대상 포함에 대한 양육농가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다각적인 대안이 정부와 본회에 의해 검토되어지고 있다.

본회는 지난달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데 이어 지난 5월16일 농림부 회의실에서 열린 법령개정을 위한 실무회의시 사슴 의무도축 시행의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 21일 농림부 가축위생과 실무자와의 회의에서도 양육농가의 현실과 기존 도축장의 시설미비 등을 종합, 관련법령 개정 등 자가도축 계속 적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식육유통이 일반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슴을 의무도축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다”며, 98년도 관련법 시행령 개정시 양육업계의 대처가 적절치 못했음을 지적했다.

사슴 자가도축 계속허용을 위해 거론되고 있는 방안은 현재 두가지.

첫째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 2조 제 1호를 개정, 사슴을 의무도축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지난해 12월 31일 개정시 신설된 동법 제 40조의 2(가축외의 동물 등의 검사) 적용을 받아 식

육 및 가공을 위한 대량도축시 정식도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경우 동법 부칙 제 2조(적용특례)를 함께 개정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나, ‘가축외의 동물 등의 검사(의뢰도축)’ 규정이 지난해 말 신설된 점을 감안할 때 시행령 개정의 명분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둘째는 법 제 7조 제 1항 제 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조(자가소비를 위한 가축의 도살·처리) 규정에 의거,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고시에 의해 자가도축 가능지역으로 지정받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전국 특별, 광역시장 및 도지사로부터 각각 지정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현재 사슴도축을 영업범위에 포함시킨 도축장이 단 한곳도 없는 점을 감안하면 사슴농가의 합법적인 도축을 위한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본회는 업계내 의견수렴 및 관련법령 검토, 농림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법령개정이 필요할 경우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 반영되도록 농림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시킬 계획이다. **민국양육**